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른 감경 없이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나.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 반
가.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1호		1,000	1,000	1,000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라.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법 제72조 제5항 제1호	1) 전부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마.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 항 제1 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41조에 따른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바.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 항 제3 호	법령 규정에 반하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3	15	30
사.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 항 제3 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아. 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		300	400	500

을 위반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 5 항 제 3 호				
자.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00 500 300 500 300	500 400 500 400 500 400	500 500 500 500 500 500
차. 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4 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보건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카.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300	400	500

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호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0	500	500
파.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0	500	500
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0 50	500 250	500 500
거.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 두지 않은 경우	150 30	300 150	500 300

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	250	500
러.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2호		5	10	15
며.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1호의2		300	600	1,000
버.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50	300	500
서. 법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 수급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5	10	15
어.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50	300	500

하지 않은 경우					
저.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처.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000	1,000	1,000
커.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000	1,000	1,000
터.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퍼.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허. 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 4 항 제 2 호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고.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6 항 제 3 호		200	250	300
노.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도.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로.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모.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법 제72조 제6항 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0	30
소. 법 제34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4호의2		300	300	300
오.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00	500	1,000
조.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	250	500
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코.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토. 법 제36조제4항	법 제72조	1) 안전검사를 받지 않	50	100	200

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제 4 항 제 2 호	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50	100	200
포.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 4 항 제 2 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 6 항 제 4 호의3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구.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 1 항 제 1 호	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	1,000	1,500

			금 액 이 500 만 원 을 초과하 는 경우에 는 500만 원으로 한 다.		
		2) 그 밖의 경우	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 액 의 100 분 의 5에 해당 하는 금 액. 다만, 해당 금액 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 만 원 으로, 해 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에 는 1,500 만 원으로 한 다.	3,000	5,000
누. 법 제38조의4제 2항을 위반하여 기 관 석 면 조 사 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 · 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150	300	500
두. 법 제38조의4제 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 제거작 업을 신고하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 제 6 항 제 5 호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00 50	200 100	300 150
루. 법 제38조의5제 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 가 석면농도기준	법 제72조 제 5 항 제 3 호		150	300	500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무.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6호	100	200	300
부.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 제2호	1,500	3,000	5,000
수.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000	1,000	1,000
우.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7호	30	150	300
주.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2호	30	150	300
추.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법 제72조 제6항 제7	300	300	300

· 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호				
쿠.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2호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	5	10	20
			100	200	500
			10	20	50
투. 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작업장당)	제 5 항 제 1 호	· 제공받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지 않은 경우	10	20	50
	푸.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6 항 제 8 호 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대상화학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대상화학물질 1종당×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	5	10	20

		다)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	5	10	20
		2) 대상화학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대상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후. 법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변경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1건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법 제72조 제6항 제8호		10	20	50
그.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 제6항 제8호		5	10	15
느. 법 제41조제8항	법 제72조		1,000	1,000	1,000

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기재사항 변경 명 령을 위반한 경우	제 4 항 제 3 호				
드. 법 제41조제11 항을 위반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르 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2 호	1) 해당 정보를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공 하지 않은 경우 2)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 정보를 제 공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르.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4 항 제 4 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 자 1명당	5	20	50
므.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 정의 방법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 항 제 5 호의2		100	300	500
브.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 6 항 제 9 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	30 300	120 300	300 300
스.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 가 요구하였는데 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제72조제5 항제5호		500	500	500
으. 법 제4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작업	법 제72조 제 5 항 제 5		100	300	500

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호의3				
즈.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	250	500
츠.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크.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5호		500	500	500
트.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2호		5	10	15
프.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9호	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	30 300	100 300	200 300
호.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	250	500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기.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2호		300	300	300
나.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1) 사업주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 근로자가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500 5	1,500 10	1,500 15
디.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0	500	500
리.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4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8조제3항 단	1,000 300 1,000 1,000	1,0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를 위반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미.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0호		30	150	300
비.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1호		30	150	300
시.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이.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1)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0 150	1,500 300	1,500 500
지.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호		300	600	1,000

우 치.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않거 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 호		50	250	500
키.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 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 두 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 호		100	250	500
티.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공 정안전보고서 내 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고 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제11 호		30	150	300
피.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 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2 호	1) 사업주가 지키지 않 은 경우(내용위반 1건 당) 2) 근로자가 지키지 않 은 경우(내용위반 1건 당)	10 5	20 10	30 15
히.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 행 명령 또는 안전 보건개선계획 수 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 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1,000	750 1,000	1,000 1,000
가. 법 제50조제3항 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72조 제5항제3		50	250	500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호					
나.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6호		1,000	1,000	1,000	
라.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2호		300	300	300	
마.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 500	300 500	500 500	
바.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2호의2		300	300	300	
샤.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법 제72조 제5항 제7호		50	250	500	

않은 경우					
야.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4호		5	10	15
자.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150	300	500
차. 법 제52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2호	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카.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72조 제6항 제13호	1)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64조제3항을	30	150	300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